

GNSO 심의용: 통일신속정지제도(URS)

2009년 10월

목차

소개.....	1
파트 I - 통일신속정지제도(“URS”) 절차 초안.....	4
파트 II - 신청자 가이드북 발체록 초안(모듈 2)	10
파트 III - 등록기구 계약 발체록 초안(모듈 5)	13

소개

URS 수립 제안은 새 gTLD에서 상표 보호를 위한 잠재적 해결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제안은 실행권고팀(<http://icann.org/en/topics/new-gtlds/irt-final-report-trademark-protection-29may09-en.pdf> 참조) 및 기타 관계자들의 권고사항을 비롯한 커뮤니티 협의와 온라인 포럼과 공개 회의에서 수집된 의견을 통해 전개되었습니다. (실행권고팀[IRT]은 새 gTLD 프로그램 내에서 상표 보유자의 권리보호메커니즘[RPM]을 식별하고 제안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URS 제안은 악의적이고 명백한 위반 도메인에 대하여 신속한 단속 절차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IRT로부터 권고사항을 받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커뮤니티와 협의를 한 후에 ICANN 직원들은 새 gTLD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일련의 실행권고안의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원래 GNSO 정책 방향이 매우 일반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사회는 GNSO에게 제안된 권고사항 계획의 구체적 분야에 관하여 적시에 집중적인 의견을 제공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직원이 권고한 아래의 권리보호메커니즘이 GNSO가 제안한 새 gTLD의 도입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것이 GNSO가 명시한 원칙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안인지 여부에 관하여 GNSO에게 일치된 견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시된 URS의 목적과 부수적인 구제책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 처리절차의 목적과 그에 따른 구제책과는 다릅니다. URS는 명확한 위반 사건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 절차를 제공하려고 고안되었습니다. URS는 역시 도메인 이름의 상표 침해 문제를 다루는 UDRP(참고: <http://www.icann.org/en/udrp/udrp.htm>)에 대한 보완 제도로써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URS는 악용하는 사이트의 운영 정지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수단을 제공하지만, UDRP는 논쟁대상 도메인 이름을 권리 보유자에게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해 사건의 해결을 모색하는 권리 보유자는 두 절차 중 하나 또는 양쪽 모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RS와 UDRP 사이의 차이점은 의도적으로 둔 것입니다. URS 처리절차가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등록기구 운영자는 문제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잠금("lock") 처리합니다(즉, 등록기구는 등록 데이터의 변경, 이전 및 삭제를 제한하지만, 이름의 분석은 계속 허용합니다. 이를 IRT는 "동결"[freeze]이라고 함). UDRP에서는 그러한 잠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URS 불만 제기자가 성공하려면 문제의 도메인 이름이 등록 기간 동안 정지되고 UDRP는 이전된 이름을 제공합니다.

URS 심사관이 판정을 내릴 때 적용하도록 제안된 표준은 (i) 등록된 도메인 이름이 등록 전에 상표 신청을 심도 있게 심사한 사법기관이 발행한 유효 등록을 보유한 불만 제기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것인지 여부, 그리고 (ii) 등록자가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나 이권을 갖고 있지 않은지 여부, 그리고/또는 도메인이 부당하게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물론 IRT가 제안한 바와 같이, URS가 가장 명확하고 노골적인 침해 행위에 대응하도록 고안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증 책임 수준이 UDRP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URS 처리절차를 진행하는 불만 제기자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표 보유자가 자신과 그 상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URS 처리절차를 개시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상표 보유자가 URS 참여자로(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사전등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IRT는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심의 및 수정 과정에서, 이들이 계속 적용 가능하려면 양식 불만 사항도 검토하고 개정해야 한다고 IRT는 제안하였습니다.

URS 분쟁 해결 공급업체(URS-DRP)는 ICANN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URS-DRP와 각 URS 처리절차를 위해 선택된 심사관의 선정 기준에는 지적 재산권 전문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과정이 상표 보유자에 의해 개시되고 상표권의 판정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노미네트 즉결 심판(Nominet Summary Decision) 모델을 위해 이들 심사관은 UDRP 판정에 필요한 것과 동일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명 또는 다수의 공급업체가 선정되든지 관계 없이, 신속한 URS 처리절차 진행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급업체는 URS를 관리할 기술적 안정성을 보유해야 하고, 심사관들은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해야 합니다.

URS 처리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URS 서비스 공급업체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정됩니다. 공급업체는 ICANN과 계약관계를 갖지 않지만 ICANN에 의해 공인 공급업체로 지정됩니다. 공급업체의 수익은 불만 제기자들이 납입하는 수수료에서 나오며, 공급업체들이 수수료를 결정합니다. 지정 내용은 비용과 서비스 수준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갱신합니다.

아래 명시된 내용은 제출부터 해결까지의 작업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통일신속정지제도(URS) 절차 제안내용의 예비 버전입니다. 이 제안은 의견 제시 및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 의도된 것입니다. 아래 설명은 현재 검토 중인 절차의 개요이며, 이는 포괄성을 띠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수렴된 의견들을 균형 있게 반영합니다.

아래의 실행내용에서, URS를 채택하는 것은 새 gTLD 등록기구 운영자를 위한 모범사례로 권장됩니다. 즉 이는 TLD와 이름 공간에 전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믿을 수 있지만 이것이 계약 요건은 아닙니다. URS가 모범사례로 지정된 경우, 신청자 가이드북의 평가 기준 해당 조항도 그 문제와 기준 및 이 문서에 표시된 점수를 포함시키고 모든 새 gTLD 신청자들에 대한 전반적 점수산정 모델을 포함하기 위해 수정될 것입니다. 즉 채택될 경우, URS는 신청자 가이드북에 발표될 것이고 URS 채택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평가 시에 점수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새 gTLD 신청자는 점수 이점을 바탕으로 URS를 채택하도록 장려될 것입니다. 하지만 gTLD 신청자가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질문의 점수 1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URS는 본질적으로 GNSO가 이 분야에 대한 정책 개발 작업을 착수한다면 그 때까지 적용될 임시 실행 해결책이며, GNSO는 모든 등록기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제도나 유사한 제도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GNSO에게는 URS가 대처하고자 하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이 해결책 또는 대체 해결책을 채택할 기회가 부여될 것입니다.

이 문서는 더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영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ICANN)에서 정확한 번역을 했지만, 영어가 ICANN의 주 언어이고, 영문 원본만이 공식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GNSO 심의용: 통일신속정지제도(URS)
2009년 10월

파트 1 - 통일신속정지제도(“URS”) 절차 초안

파트 I - 통일신속정지제도(“URS”) 절차 초안

1. 불만 제출

- 1.1 처리절차는 상표권과 상표 소유자가 구제를 구하도록 불만을 야기한 행동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불만 사항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 1.2 각 불만 사항에는 해당 수수료(심의 중)가 부과됩니다. 이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1.3 다수의 관련 회사들이 단일 등록자에 대한 하나의 불만 사항을 수용할 수 있지만, 이는 불만제기 회사들이 관련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수의 등록자들의 이름을 하나의 불만 사항에 기재할 수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든 관련이 있음을 표시할 수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출의 전제조건으로 지정된 도메인 이름의 최소 수량은 없습니다.
- 1.4 불만의 내용
 - a) 불만 당사자의 이름, 이메일 주소 및 기타 연락처 정보.
 - b) 불만 당사자들을 위한 대리권을 가진 사람의 이름, 이메일 주소 및 연락처 정보. 등록자의 이름(예: Whois에서 제공되는 관련 정보) 및 기타 확보 가능한 연락처 정보.
 - c) 불만 대상인 특정 도메인 이름. 각 도메인에 대하여, 불만 사항에는 현재 확보 가능한 Whois 정보 사본, 불만 대상 각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웹 사이트 내용의 사본이 포함되어야 함
 - d) 불만의 대상이고 불만 당사자들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특정 상표/서비스표, 해당 물품 및 관련 서비스.
 - e) 불만의 근거에 대한 설명 – 여기에는 불만 당사자가 구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표시하는 사실을 명시해야 함. 이 표준은 UDRP 표준과 유사하지만 강화된 증거 입증 책임을 요구합니다. 즉, 등록된 도메인 이름이 등록 전에 상표 신청을 심도 있게 심사한 사법기관이

발행한 유효 등록을 보유한 불만 제기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것인지 여부, 그리고 등록자가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나 이권을 갖고 있지 않은지 여부 및/또는 도메인이 부당하게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이 표준을 충족하려면 모든 관련 요소가 식별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등록자에 대한 다음 내용을 입증하는 사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i. 도메인의 이름으로 등록자를 알 수 없음.
- ii. 등록자가 도메인을 선의로 사용하지 않음.
- iii. 도메인 이름에서 파악된 상표 소유자와 아무 관계가 없음.
- iv. 도메인 이름에서 파악된 상표 소유자의 도메인 사용 허락을 받지 않았음.
- v. 다른 상표가 포함된 도메인 이름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적이 있음.
- vi. 다른 사람의 비즈니스를 방해할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 사용 또는 거래한 적이 있음.

마지막으로, 불만 제기자는 불만 사항을 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불만 제출에 대한 충분한 선의의 근거가 있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2. 수수료

수수료는 URS 공급업체가 부과합니다. 수수료 금액의 범위는 판결 건당 미화 300달러 범위가 될 것이며, 공급업체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이는 유사한 환경에서 판결을 하는 패널 위원 등을 포함한 전문가, Nominet summary 모델, 그리고 재등록을 통한 간소화 기회에 대한 추정을 바탕으로 한 금액입니다. 수수료는 패자부담방식이 아닙니다. 이 방식을 통하여 예상되는 분쟁의 성격을 고려할 때, 불만에 대한 응답이 제출되지 않고 비교적 소액인 수수료 회수 비용이 수수료 가치를 초과할 때가 자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초기 검토

불만 사항은 제출 요건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URS-DRP의 최초 검토 또는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불만 사항에 모든 필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순히 검토하는 과정이며, 명백히 사건이 성립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통지 및 도메인 잠금

4.1 URS-DRP는 우선 불만 사항이 제출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 후 24 시간 내에 등록기구 운영자에게 (이메일 또는 심의 중인 다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등록기구 운영자는 URS-DRP로부터 통지를 수령한 후 24시간 내에 도메인을 “잠금”(Lock)해야 합니다. 즉 등록기구는 등록 데이터에 대한 모든 변경(도메인 이름의 이전 및 삭제 포함)을 제한하지만 이름에 대한 분석은 계속됩니다. 도메인 이름을 잠글 경우, 등록기구 운영자는 URS-DRP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4.2 도메인 이름이 잠겼다는 통지를 등록기구 운영자로부터 받은 후 24시간 내에, URS-DRP는 등록자에게 불만 사항을 통지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불만 사본을 제공하고 잠금 상태 및 등록자가 불만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방어하지 못할 경우의 영향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URS-DRP는 등록자에게 전자식, 종이 및 팩스 통지를 송부하며, 이 때 주소는 Whois 연락처 정보에 열거된 주소를 사용합니다(비전자식 통지 시기에 관한 제안 내용을 현재 심의 중임). 또한 URS-DRP는 등록기관에 문제 도메인 이름의 기록도 통보해야 하며, 이 때는 등록기관이 ICANN의 파일에 보유한 주소를 사용합니다.

5. 응답

5.1 등록자는 URS-DRP가 통지서를 등록자에게 보낸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답을 제출, 송부해야 합니다. [응답이 불만 사항에서 문제가 되는 도메인 이름 26개 이상과 관련된 경우에만 응답 시에 응답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제안은 등록자가 승소할 경우 응답 수수료의 환불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 여부와 함께 여전히 심의 중입니다.]

- 5.2 등록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타당한 선의의 근거가 있고 불만 제기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URS-DRP는 약간의 응답 시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연장 기간은 7일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5.3 응답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등록자 데이터 확인.
 - 각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수용 또는 거절.
 - 불만 제기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방어내용.
 -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진술.
- 5.4 처리를 신속히 하자는 URS의 본질과 성공한 불만 제기자에게 부여할 구제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불만 제기자가 부당한 불만 사항을 제출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자의 적극적 구제 청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5.5 응답이 제출되면, URS-DRP는 응답이 응답 제출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불만 사항, 응답 및 증빙 자료를 URS-DRP가 선임한 유자격 심사관에게 송부하여 검토 및 판정을 하도록 합니다.

6. 불이행

- 6.1 14일의 응답 기간(또는 부여된 연장 기간) 만료 시까지 등록자가 응답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만이 불이행 상태로 진행됩니다. 응답이 제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역시 불이행에 해당됩니다.
- 6.2 어떤 경우든지 간에, URS-DRP는 이메일을 통하여 불만 제기자와 등록자에게 불이행 통지를 하고, 등록자에게는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불이행 통지를 합니다. 불이행 기간 동안에는 등록자가 이제 합법적 사용임을 주장하기 위해 사이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며, Whois 정보를 변경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6.3 하지만 모든 불이행 건은 심사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제한적 상황에서 일부 방식으로 불이행 상황을 구제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만, 이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안입니다.

7. 심사 표준

유자격 심사관이 판정을 내릴 때 적용하는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된 도메인 이름이 등록된 도메인 이름이 등록 전에 상표 신청을 심도 있게 심사한 사법기관이 발행한 유효 등록을 보유한 불만 제기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것인지 여부
- 등록자가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나 이권을 갖고 있지 않은지 여부
- 도메인이 부당하게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위에 명시된 표준이 UDRP 처리절차와 동일하지만,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요구하는 증거 입증 책임 수준은 의도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URS가 가장 명확하고 노골적인 침해 행위에 대응하도록 고안되었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8. 판정

- 8.1 증거개시 및 청문회 절차는 없으며, 증거는 불만 사항 및 응답에 첨부하여 제출되는 자료들이며, 그러한 자료들은 심사관이 판정을 내릴 때 사용하는 기록의 전부입니다.
- 8.2 불만 제기자가 증거입증 책임을 충족하면 심사관은 불만 제기자에게 유리하게 판정을 내립니다. 판정 내용은 URS-DRP의 웹사이트에 발표됩니다. 하지만 해당 URS 처리절차 외에 다른 판정 배제효과는 없어야 합니다.
- 8.3 불만 제기자가 증거입증 책임을 충족하지 못하면 URS 처리절차가 종료되고 도메인 이름에 대한 모든 통제권은 등록자에게 돌아갑니다.
- 8.4 URS 처리절차에서 도출된 판정은 공개적으로 제공되므로, 다음 등록자에게 해당 도메인이 URS 처리절차를 거쳤음을 추가로 통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 8.5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판정은 응답 제출일부터 14일 이내에 발표됩니다.

9. 구제책

판정이 불만 제기자에게 유리하게 내려졌을 경우, 등록 잔여 기간 동안 도메인 이름이 정지됩니다. 그러면 URS 처리절차로 인하여 정지된 사이트임을 알리는 표준 게시물이 있는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도메인 이름이 보류 상태이고 등록 기간 동안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 Whois 기록을 변경해야 합니다.

10. **부당한 불만**

- 10.1 불만 사항이 부정확한 또는 부적절한 목적으로 제출되었을 경우 등록자는 제한적 반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10.2 불만 제기자가 세 번에 걸쳐 부당한 불만을 제출하였을 경우, 해당 불만 사항은 세 번 중 마지막 부당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1년 동안 URS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불만에 대한 정의는 현재 심의 중입니다.]
- 10.3 부당함이 밝혀지면 항소할 수 있고, 심사관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독단적으로 또는 일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행동하였는지 여부만을 결정하기 위해 검토를 실시합니다.

11. **항소**

판정이 불만 제기자에게 유리하게 내려질 경우, 다음 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등록자에게 항소를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 a) 결정이 독단적이고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거나 심사관의 재량 남용이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옴부즈맨의 재심의를 요구. 다만 옴부즈맨에 대한 항소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고 추가적 심의 대상임.
- b) 관할 법원에 항소.

GNSO 심의용: 통일신속정지제도(URS)

2009년 10월

파트 II - 신청자 가이드북 발췌록 초안(모듈 2)

파트 II - 신청자 가이드북 발췌록 초안(모듈 2)

아래의 가이드북 발췌록에서, URS를 채택하는 것은 새 gTLD 등록기구 운영자를 위한 모범사례로 권장됩니다. 즉, 이는 TLD와 이름 공간에 전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믿을 수 있지만 이것이 계약 요건은 아닙니다. 실질적 효과는 모범사례로서 URS 문제는 선택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즉 문제가 점수화되지만 신청자가 '0'점을 받더라도 평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URS의 채택을 권장하지만 필수요건이 아니고 통과를 위해 필요한 사항도 아닙니다. URS를 모범사례로서 평가 기준에 포함하도록 결정할 경우, 모든 새 gTLD 신청자 평가에 관한 전반적 점수산정 모델에 통합하기 위해 평가 기준의 해당 절도 그 문제와 기준 및 아래 표시된 점수를 포함하도록 수정될 것입니다.

모범사례로서 URS를 통합하기 위해 가이드북 모듈 2의 해당 절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것입니다.

2.1.2.1 기술/운영 검토

신청 시, 신청인은 신청인의 기술 역량과 제안된 gTLD 운영 계획에 관한 정보 수집을 위해 마련된 일련의 질문에 응답해야 합니다.

신청자들은 기술/운영 검토를 통과하기 위해 실제 gTLD 등록기구를 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청자는 gTLD 등록기관 운영의 핵심적 기술 및 운영 측면에서 일부 기초작업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행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 및 운영 평가와 기타 모든 단계를 통과한 각 신청자는 새 gTLD를 위임하기 전에 사전 위임 기술 테스트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듈 5 '위임으로 전환'을 참고하십시오.

신청 과정의 기술/운영 부분의 일환으로 모든 신청자들은 제안된 메커니즘이 계약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TLD의 기존 권리 보호용으로 제안된 메커니즘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권리 보호 메커니즘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i) 상표 정보센터의 데이터 사용. 새 gTLD 등록기구 운영자는 TLD 초기 착수 단계에서 권리 보호를 위하여 (a) 상표 감시(Trademark

Watch) 서비스 또는 (b) 상표권자 예약등록(Sunrise Period) 옵션 중에서 하나를 실행할 수 있다. 등록기관 운영자는 이 두 가지 서비스를 위해 정보센터의 검증된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신청자는 선택한 옵션 실행 제한을 설명해야 한다.

- (ii) 통일신속정지제도(URS)의 채택. URS는 명확한 권리 침해 사건을 해결하는 신속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UDRP를 보완하고 모든 새 gTLD를 위한 모범사례로 권장되고 있다. 신청자가 이를 채택할 경우 TLD에서 URS를 실행하는 제안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모듈 2에 첨부된 평가 기준도 아래와 같이 수정될 것입니다.

#	질문	점수 범위	기준	점수
36	<p>옵션. 권리보호메커니즘: URS</p> <p>(a) 신청자가 통일신속정지제도(URS)에 참여할 경우, TLD의 URS 정책 및 절차 실행 계획 그리고 URS 처리절차에서 나온 판정의 준수 계획을 설명한다.</p>	1-0	<p>URS는 선택적 서비스로서 gTLD 등록기구 운영자를 위한 모범사례로 권장된다. 착수 시에 URS 실행 계획으로 이 질문에 응답하는 신청자의 경우, 완전한 답변이 제시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TLD에서 URS 실행을 위해 우수하게 작성된 상세 절차 2. 제시된 절차가 계획된 비용에 적절히 반영되어 	<p>1 - 요건 충족응답에 포함되는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자가 이 요소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지식을 충분히 보여주는 자세한 설명을 제공. (2) 등록기구 계약에 따라 실행할 경우 결과로서 신청자의 계약 요건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음. (3) 정책과 절차가 신청서에 기재된 전반적 비즈니스 접근 방법에 부합함. <p>0 - 요건 불충족 점수 1을 얻는 데 필요한</p>

			<p>있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전반적 비즈니스 접근법과 일치함</p> <p>3. 등록기구 계약에 따라 실행할 경우에 제시된 절차가 계약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함.</p>	<p>요건을 충족하지 않음.</p>
--	--	--	---	---------------------

GNSO 심의용: 통일신속정지제도(URS)

2009년 10월

파트 II - 등록기구 계약 발체록 초안(모듈 5)

파트 II - 등록기구 계약 발체록 초안(모듈 5)

위의 URS 실행에 따라 등록기구 계약은 아래와 같이 수정될 것입니다.

등록기구 운영자가 gTLD 신청서에서 통일신속정지제도(URS)를 실행하겠다고 명시하였으면, 등록기구 운영자는 URS 처리절차의 결과로 나온 판정의 이행을 포함하여 수시로 유효한 URS를 채택하여 실행해야 한다.

ICANN은 여기에 제공되는 잠정적 표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권장합니다. 이 표현은 토론용으로만 제시되는 것이며 신청서 가이드북에는 아직 편입되지 않았습니다. 제시되는 의견은 다음 버전의 신청자 가이드북 전체 초안에서 고려될 것입니다.